

청주교육대학교 하부조직 규정

제정 1995. 7. 4

9차 개정 2016. 04. 27. 규칙 제1414호
10차 개정 2017. 07. 03. 규칙 제1441호
11차 개정 2018. 03. 15. 규칙 제1464호
12차 개정 2019. 05. 01. 규칙 제1485호
13차 개정 2020. 5. 11. 규칙 제1531호
14차 개정 2022. 8. 12. 규칙 제1616호
타규정개정 2023. 4. 4. 규칙 제1632호
15차 개정 2025. 6. 17. 규칙 제1669호
16차 개정 2025. 9. 24. 규칙 제1676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하부조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교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팀을 둔다.

② 팀장은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제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팀과 입학팀을 둔다.

② 학생팀장과 입학팀장은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제5조(총무처) ① 총무처에 총무팀, 재무팀, 시설팀 및 설비팀을 둔다. <개정 2022.8.12.>

② 총무팀장과 재무팀장은 행정주사(보)로 보하고, 시설팀장은 시설주사(보)로 보하며, 설비팀장은 공업주사(보)로 보한다. <개정 2020.5.11.>, <개정 2022.8.12.>

③ 삭제

제6조(교육대학원) ① 교육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② 팀장은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제6조의2(교육전문대학원) ① 교육전문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신설 2025.6.17.>

② 팀장은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신설 2025.6.17.>

제7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팀, 재정사업팀, IR팀을 둔다. <개정 2020.5.11.>

② 기획팀장과 재정사업팀장은 행정주사(보)로 보하고, IR팀장은 (책임)연구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5.11.>

제8조(학술문화원) ① 학술문화원에 사서팀을 둔다.

② 팀장은 사서주사로 보한다.

제9조(정보전산원) ① 정보전산원에 전산팀을 둔다.<개정 2023.4.4.>

② 팀장은 전산주사로 보한다.

제10조(교육연수원) ① 교육연수원에 행정실을 둔다.

② 실장은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제11조(부설초등학교) ① 부설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둔다.

② 실장은 행정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로 보한다.

제12조(생활관) ① 생활관에 행정팀을 둔다.

② 팀장은 행정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로 보한다. <개정 2020.5.11.>

제13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행정실을 둔다.<개정 2022.8.12.><개정 2025.9.24.>

② 행정실장은 행정(전산)주사(보) 또는 시설(공업)주사(보)로 보한다.<개정 2022.8.12.>
<개정 2025.9.24.>

제14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을 둔다.

② 팀장은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제15조(과학영재교육원) ① 과학영재교육원에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 업무는 소속 직원이 담당한다.

제16조(교육연구원) 교육연구원의 행정업무는 소속 직원 및 조교가 담당한다.<개정 2018.3.15.>

제17조(충청교육연구소) 삭제 <2018.3.15.>

제18조(재정사업단) 삭제 <2020.5.11.>

제19조(수영안전교육관) 삭제 <2022.8.12>

제20조(인권센터) 인권센터의 행정 업무는 소속 직원 및 조교가 담당한다.<신설 2022.8.12.>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직중인 교육대학원 교학과장, 초등교원연수원 서무과장, 부설초등학교 서무과장은 각각 행정실장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계획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4호, 2008.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72호, 2011.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69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14호, 201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41호, 2017.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64호, 2018.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85호, 2019.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31호, 2020.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16호, 2022.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32호, 2023. 4. 4.>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우리대학 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교육정보원” 을 “정보전산원” 으로 한다.
2. “교육정보원장” 을 “정보전산원장” 으로 한다.

부 칙<제1676호, 2025.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